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5. 24 선고 2020가단816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현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준홍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호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소영, 송현승

변론 종결2023. 4. 5.

판결 선고2023. 5. 24.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4,242,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9.부터 2023.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는 원고에게 89,856,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순천시 E 답 5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7.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2. 30. 접수 제567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7.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 30. 접수 제39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화재사고 발생 등

- 1) 원고는 순천시 F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카센터를 운영하였다.
- 2) 피고 B는 2019. 12. 27. 카센터의 간이창고에 설치되어 있던 시즈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고 퇴근하였는데, 2019. 12. 28. 00:28경 위 시즈히터의 발열부 오작동으로 인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대부분과 원고의 법무사사무실 내 시설물,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 3) 피고 B는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2021.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실화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18:1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퇴근을 하면서 평소 물을 데우기 위해 사용하는 시즈히터(Sheath Heater)의 전원을 끄지 않고 퇴근하였다.

차가운 물을 수분 내 급격하게 데울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즈히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시즈히터 미 사용시 전원을 끄고 전기콘센트의 플러그를 뽑는 등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즈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고 퇴근한 과실로, 시즈히터의 발열부가 오작동을 일으켜 과열로 발화하고 다음날인 00:28경 그 불이 번져 피해자 I가 소유하는 순천시 G 지상의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피고인, 피해자 A, 피해자 J, 피해자 K이 각 소유하는 시설물, 집기 및 위 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B와 피고 B의 배우자인 N은 2019. 7. 2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B와 N은 2019. 12.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접수 제56748호로 2019. 7.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15,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3) 피고 B와 N은 2020. 1. 30.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접수 제3920호로 2019. 7.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당시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 B가 운영하던 카센터에 설치되어 있던 시즈히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위 시즈히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피고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시설 수리복구 비용 11,650,038원, 소훼된 집기비품(미술품 제외) 가액 22,470,126원, 영업손실금액 2,802,518원, 소훼된 미술품 가액 25,400,000원, 임시 사무실 임차 비용 2,500,000원, 영업재개를 위한 공사 비용 등 11,886,500원, 위자료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1).

2) 시설 수리복구 비용 상당 손해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 2020카기10011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O의 감정결과(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훼된 원고의 법무사사무실에 설치된 시설의 수리복구 비용2) 이 합계 8,039,131원(가설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가구공사, 전기공사, 급수급탕설비공사: 6,936,646원 + 렉산공사: 442,485원, + 간판공사: 66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시설 수리복구 비용 8,039,131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비용 3,610,907원 상당의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I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으로 I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대부분 소훼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임차한 법무사사무실에 설치한 시설과 관련하여 소유자인 I에게 철거 및

폐기물처리 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집기비품(미술품 제외) 가액 상당 손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법무사사무실 내에 있던 벽걸이에어컨 등 22,470,126원 상당의 집기비품(미술품 제외)이 소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소훼된 집기비품(미술품 제외) 가액 22,470,126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영업손실 손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대부분과 원고의 법무사사무실 내 시설물, 집기 등이 소훼되었는바, 원고의 영업 내용, 형태,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1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수행하지 못한 1개월 동안 매출감소로 인하여 2,802,518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영업손실금액 2,802,518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미술품 가액 상당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법무사사무실 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액 합계 25,400,000원 상당의 그림 10점이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위 그림이 소훼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다고 주장한다.

1	P	Q	2,000,000
2	R	S	2,000,000
3	T	U	3,500,000
4	T	V	1,400,000
5	W	X	5,000,000
6	W	Y	3,000,000
7	W	Z	2,500,000
8	W	AA	1,500,000
9	W	AB	1,500,000
10	AC회사 AD	AE	3,000,000

그러나 위 표 중 순번 5, 6, 7번 기재 그림이 원고의 법무사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훼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5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7, 제9호증의 1 내지 6,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나머지 그림의 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 상당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그 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임시 사무실 임차 비용 상당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전에 고객이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해 법원 앞 식당가에 있는 사무실을 2개월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가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2,500,000원(= 월당 1,250,000원 × 2개월)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영업 내용, 형태,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여 정상적인营业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1개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위 1개월 동안의 매출감소로 인한 영업손실금액 2,802,518원을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인정하였는바, 위 영업손실금액은 원고 법무사사무실의 2019년도 매출액과 고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위 고정비에는 사무실 임차료[연 19,700,000원3), 월로 환산하면 1,591,666원(= 19,700,000원 / 12개월, 원 단위 미만 버림)]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1개월 동안 임시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250,000원은 위 사무실 임차료 액수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1개월 동안 임시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하여 1,25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 1개월 이후에 원고가 임시로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영업재개 비용 상당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해 다른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중개수수료 1,320,000원, CCTV설비 880,000원, 공사비(한국전력공사) 786,500원, 전기공사 4,620,000원, 옥외광고물 650,000원, 광고물공사 3,630,000원 등 합계 11,886,5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훼된 이 사건 건물의 시설 중 원고가 설치한 부분의

수리복구 비용 8,039,131원 상당을 손해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새로 임차한 건물에 전기시설, 광고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화재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20. 다른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로 1,32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중개수수료는 이 사건 화재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중개수수료 1,32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액의 감경

피고 B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재사고는 B의 카센터 간이창고에 있던 시즈히터 발열부의 오작동으로 인한 과열로 발생한 것인 점, ② 피고 B가 시즈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퇴근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손해는 피고 B의 카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이 사건 건물 전체로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의 책임을 70%로 경감한다.

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의뢰인들의 자료나 다년간 쌓아온 과거 자료 등을 저장한 전자매체 등이 소실되어 영업적, 정식으로 막대한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 B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4,242,242원[= {시설 수리복구 비용 8,039,131원 + 집기비품(미술품 제외) 가액 22,470,126원 + 영업손실금액 2,802,518원 + 중개수수료로 1,320,000원} × 70%,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12. 29.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채무초과상태에서 처형인 피고 C, 지인인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이전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하여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 피고 C, D은 피고 B와 배우자인 N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C, D은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피고 B의 일반채무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질 때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표준으로 하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화재가 발생한 2019. 12. 28.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제10, 11, 12, 14,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2019. 7. 19. 피고 B의 계좌로 100,520,000원을, 피고 D은 2019. 7. 22. 피고 B의 계좌로 29,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던 점, ② 피고 C을 대여인, 피고 B를 차용인으로 하여 2019. 7. 19.자로 차용금 100,520,000원의 차용증서가, 피고 D을 채권자,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2019. 7. 22.자로 차용금 29,000,000원의 차용증이 각 작성되어 있는 점, ③ 피고 B와 N은 2019. 7. 22. 피고 C, D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AF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④ 피고 B를 채무자, 피고 C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B와 N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15,200,000원으로 하는 2019. 7.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피고 B를 채무자, 피고 D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B와 N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4,000,000원으로 하는 2019. 7.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각 작성되어 있는 점, ⑤ 위 차용증서, 차용증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처분문서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9. 7. 19.과 2019. 7. 22.에 각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곽희두

1)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합계 96,709,182원으로 청구금액 89,856,182원과 차이가 나는바, 이는 계산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비용 3,610,907원 제외.

3) 갑 제12호증 제17면.

4)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282513 판결 등 참조).